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전영향협의 요청 방법,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과 절차, 진단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진단보고서 검토 방법 및 절차, 약식영향진단 대상과 시기 및 방법과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생략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개발계획의 목적, 주요 개발내용,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도, 부지조성계획 및 건축계획 등 공사계획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영향진단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각 방법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은 영향진단을 착수한 즉시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착수신고서에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진단지역 위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2명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이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보호방안을 마련(이하 “유존지역평가”라 한다)
3.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평가와 동시에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영향검토”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마련된 보호방안을 유존지역평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유존지역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 나.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 다.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영향
- 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진단기관의 의견

2.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지역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도면 및 면적
- 나. 해당 사업지역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에 미치는 영향

다. 보존조치 방안 또는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

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진단기관의 의견

3.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진단보고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마련된 행위기준의 범위 초과 여부

나. 제1호에 따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 의견서 첨부) 및 필요한 경우 저감조치 방안

다. 영향검토를 실시한 진단기관의 의견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땡파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사실로 진단보고서의 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평가 내용을 갈음할 수 있다.

1. 땅깍기나 땡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숲아베기

④ 진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완료신고서와 함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마련된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제4호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감조치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진단보고서의 구성
2. 영향진단 방법의 적정성
3. 영향진단 결과의 타당성
4. 역사문화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
5.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의 타당성
6. 그 밖에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제8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을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현상보존: 매장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거나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2.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절차의 이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참관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과 참관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유산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나.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②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른 이행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시설물 배치가 변경되거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향검토만 실시한다.

제10조(이행사항 점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사항 이행 결과
2.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이행 결과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이행사항 완료 보고 후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행사항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건설공사 완료 후 차년도 말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과 내역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과 내역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정 결과 내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5. 관련 교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 실적
6.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8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

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공사의 인가·허가를 신청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구 분	영향진단 실시시기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p>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p>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p>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p>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p>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p>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p>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p>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3. 에너지 개발	<p>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p>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p>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p>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4. 항만의 건설	<p>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p>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p>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5.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6. 수자원의 개발	<p>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8. 공항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0. 공유수면의 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2. 특정지역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평택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p>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p>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p>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3. 체육시설의 설치	<p>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p>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p>「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p>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p>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16. 그 밖의 건설공사	<p>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p>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인력 및 시설 요건(제16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인력	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2. 시설	가.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다. 교육시설 총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 마. 국가유산청장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제4호	지정취소	

행정기관명

수신 국가유산청장
(경유)

제목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계획)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합니다.

1. 계획명:
2. 근거법령:
3. 대상지 위치:
4. 계획면적:

- 붙임 1. 개발계획(안) 1부
2.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1부.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개발계획명				
개발계획 근거법률				
계획 수립 목적				
대상지 위치				
계획면적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 여부		
	1. 개발계획 대상지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2. 개발계획 대상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3.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4.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행위기준 범위 내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5.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이 서식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 또는 이와 연접한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의 보존방안 검토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6.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매장유산에 대한 보호방안 검토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7.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환경오염, 소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최소화방안 검토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8.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2호의 국가지정유산 내부 주요 조망점에서 외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요 조망대상으로의 조망축 보호방안 검토 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협의 요청 기관의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영향진단 완료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진 단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건설공사 시행자	시행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설공사명							
진 단 내 용	실시여부 []	조사면적					
		육상	m ²	수중	m ²		
	조사지역(대표주소)						
	조사기간						
	조사시작일		조사완료일		현장조사일수 일		
	지표조사	조사자	자격구분	성명	소속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조사비용							
원							
유구·유물 유무		유구		유물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실시여부 []	발굴조사						
	[]	[]	[]	[]	[]		
유존지역평가	공사시행	원형보존	이전복원	참관조사	표본조사		
	m ²	m ²	m ²	m ²	m ²		
실시여부 []	관련유산명	[] 영향 없음	[] 영향 있음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영향검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 영향진단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산영향진단보고서	수 수 료 없 음
------	----------------	--------------

국가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참관조사 지역 (주소)				
참관조사관	소속		참관조사일 년 월 일	
	성명			
참관조사관 의견	<input type="checkbox"/> 건설공사 시행 <input type="checkbox"/> 정밀발굴조사 <input type="checkbox"/> 시굴조사 <input type="checkbox"/> 표본조사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의견			

위와 같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	---

210mm×297mm[백상지 80g/㎡]

원상회복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원상회복면적	m ²
	명령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대상 지정유산	종 류	명 칭	
사업 개요	사업명		
	위 치	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지정유산 특이사항		
	검토항목		
1. 해당 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땅파기)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천연기념물등이 서식·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동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동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9. 그 밖에 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영향 없음	[] 영향 있음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지정유산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유산 등), 지정유산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지정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지정유산 내 별도 지정유산 포함 여부, 지정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지정유산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지정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유사사항에 대한 허가 여부

제 호

국가유산 영향진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주소:
3.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4. 법인명(단체명):
5. 지정조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 영향진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직인